

1.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의 감경 문의

상담요청

○○건설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처분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 상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80조, 별표 6에 따르면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6개월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 감경을 허용합니다. 기술인력의 일시적 결원(사망·퇴직·육아휴직 등) 시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 기술인력 미달이 일시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자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명서를 작성해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서에는 부족 인원 수 및 사유, 보완 노력, 현재 충족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법령 해석 착오·경미한 과실·기술인력 재확보 및 교육 이수(8시간 이상) 등 사정을 주장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기성금)의 발주처 직접지급에 관련 문의

상담요청

발주처가 원도급사의 대금청구 시, 하도급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상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은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체결된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채권은 하도급업체(하수급인)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더 이상 원도급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후 원도급자의 채권 압류나 가압류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2021다273592(2025.4.3.선고) 판례 또한 하도급법의 우선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존재한다면 발주자는 해당 대금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원도급자의 압류채권은 무효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안전을 위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필요성은 낮습니다.
- 따라서, 직불합의가 성립된 이상 발주자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공탁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